추크 프로토콜 재단의 목적 조항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스위스 재단은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법인격을 가진 목적 재산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그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이를 감시합니다.[1] 목적 조항은 재단의 헌법입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 스위스 민법 제85조 및 제86조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너무 좁으면 재단의 숨통을 조입니다. 목적이 너무 넓으면 감독당국이 재단이 실제로는 설립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지 묻게 됩니다. 아래 조항은 여러 변형을 거치며 감독당국의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요소는 공익적 색채(개방형 프로토콜의 지원), 분배 금지 규칙, 그리고 영리활동의 제한입니다.

> **목적.** 재단의 목적은 [기능]을 위한 오픈소스·무허가형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인 [명칭] 프로토콜의 개발, 보안, 탈중앙화 및 채택을 그 이용자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단은 특히 다음을 할 수 있다. (a) 연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의뢰하며 공표하는 것, (b) 개발자, 연구자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c) 교육, 행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 (d) 프로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콜의 거버넌스 및 검증에 참여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명칭] 토큰 및 기타 자산을 보유, 관리 및 활용하는 것, (e) 프로토콜과 관련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개방적 조건으로 이를 라이선스하는 것, 그리고 (f) 공공기관, 표준화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것.

제한. 재단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아니한다. 재단은 목적에 기여하고 목적에 종속되는 범위에서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자, 재단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 보증 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재단은 목적의 추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산이나 소득을 누구에게도 분배하지 아니한다.

자산. 설립자는 재단에 [스위스프랑 금액]과 [수량]개의 [명칭] 토큰을 출연한다. 재단은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이 보유하는 토큰은 재단 이사회가 제정하고 감독당국에 통지하여 개정할 수 있는 재단의 투자 및 재무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해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같거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스위스에 소재지를 둔 면세 법인에 이전되어야 하며, 설립자나 재단 이사회 구성원에게 귀속될 수 없다.

재단의 세법상 지위는 목적 조항과 실제 활동에 좌우됩니다. 연방직접세법 제56조 g호에 따른 면세는 공익 또는 자선 목적을 배타적이고 철회 불가능하게 추구할 것과 사익 추구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프로토콜 재단은 설립자가 토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2] 이 조항은 면세를 신청할 수 있되 면세에 의존하지는 않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산 조항은 세무당국의 표준 요건을 따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스위스 민법 제80조 이하, 제84조(감독). 연방 재단감독청(Federal Supervisory Authority for Foundations, ESA)은 전국적 또는 국제적 활동 범위를 가진 재단을 감독하며, 추크의 거의 모든 프로토콜 재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P편 제II장 참조. ↩
2. 연방직접세법 제56조 g호. 프로토콜 재단에 관한 추크 세무서의 실무는 제G편 제IV장에서 다룹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